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자치행정과-11460 |
| 등록일자 | 2015.7.6.   |
| 결재일자 | 2015.7.8.  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 |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| 마을공동체지원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치행정과장                   | 주민자치국장 | 부구청장 | 구청장          |
| 서수현 | 조중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선희                      | 이경현    | 代이경현 | 07/08<br>문석진 |
| 협 조 | 정책기획담당관<br>홍보담당관<br>주택과장<br>주택행정팀장 | 임근래<br>고재용<br>강환복<br>조문익 |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
2015년 제2차 서대문구 우리마을지원사업

## 아파트 공동체 공모계획



서대문구  
자치행정과

# 아파트 공동체 공모계획

행복하고 살기좋은 사람중심의 서대문구 구현을 위하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웃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I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
- 2015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계획 【자치행정과-2671, 2015.2.11】

## II 추진방향

### Key Objective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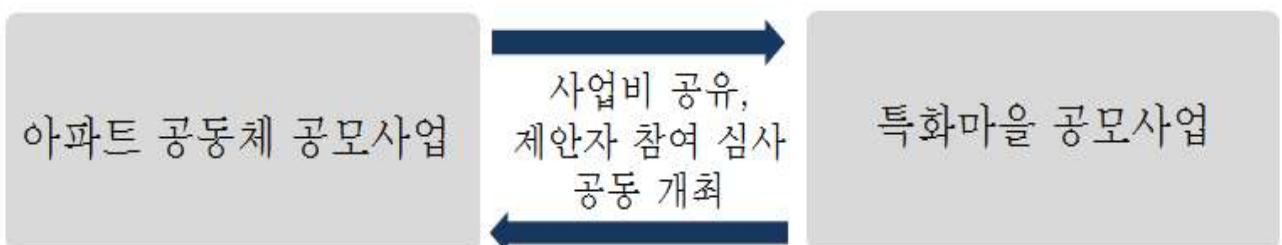
- 1 단지 밖 이웃마을과 연계망 형성 및 확장 의지가 있는 아파트 중점 지원
- 2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한 단계별·맞춤형 컨설팅으로 주민과 노하우 공유
- 3 자생력·지속력 강화를 위해 사업 선정시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
- 4 온라인, 오프라인을 활용한 소통과 공유
- 5 사업별 마을공동체 교육 의무화를 통한 주민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

함께하는  
공동체  
활성화  
기반 마련

### Ⅲ

##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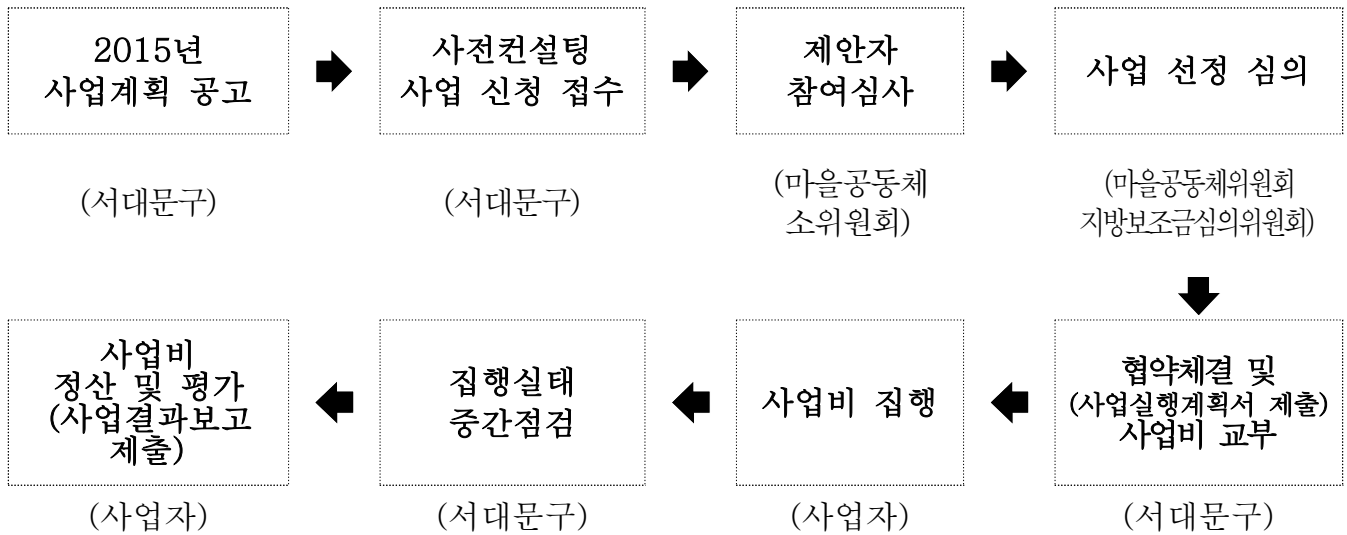
- 사업명 : 2015년 제2차 서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15. 11. 30.
  - \*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공모분야 :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
- 신청자격
  - 서대문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(모임)·단체
    - ▷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
    - ▷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
    - ▷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한 경우 동일 모임으로 간주
  - \* 1개 주민모임·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, 중복지원 불가
- 지원내용 : 보조금, 마을상담·교육, 마을사업 컨설팅 등
  - 보조금 : 활동비성 경비, 홍보인쇄비,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사업비
  - 지원한도 :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원  
(1개 사업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)
    - \*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, 심사 선정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에 따라 차등 지원
  - 제외대상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임대료 등 운영비
- 사업비 : 금15,000천원
- 특이사항 : 특화마을 공모사업 중 아파트 관계망 회복사업과 협의 공동 추진



# IV

## 세부추진계획

### 1. 지원 절차



### 2. 사업 공모

#### ■ 사업공고

- 서대문구청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

#### ■ 공모분야

-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

| 유 형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|---|
| 아파트공동체<br>활성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파트 관리비 및 에너지절감(관리비 진단사업)</li> <li>- 층간소음, 층간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</li> <li>- 주민소통게시판 운영 등 주민화합</li> <li>- 생활공유사업(도서, 공구, 공동육아, 차량(카셰어링), 공유창고 등)</li> <li>- 텃밭가꾸기, 친환경생활, 문화강좌, 주민화합 등</li> <li>- 기타 단지내·외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정하기에 적합한 사업</li> </ul> |

※ 생활공유사업의 경우 2015년 우리구 중점 추진사업으로 가점 부여

※ 제외분야 -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

- 2015년 타 공모사업 선정·지원사업

※ 지원 제한 사업 :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

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적으로 보조금(국·시·구비)을 지원받는 사업
- 일방적·수혜적 복지사업 (ex. 단순 도시락(반찬)배달, 김치전달 등)
-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(지원)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직업훈련, 교과목 특기적성, 어학, 자격증 취득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
-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

### 3. 사업신청 접수

- 공고기간 : 2015. 7. 10.(금) ~ 7. 31.(금)
- 접수기간 : 2015. 7. 20.(월) ~ 7. 31.(금)
- 접수방법
  - 이메일접수 : [hyen02@sdm.go.kr](mailto:hyen02@sdm.go.kr) 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고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
  - ① 공모사업제안서 1부.
  - ② 사업계획서 1부.
  - ③ 모임 소개서(사업 참여자 명단 포함) 1부.
  - ④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.
  - ⑤ 단체등록증 사본(등록된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) 1부.
- 지원한도
  -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급(최대 3백만원 이내)

### 4. 제안자 참여 심사

- 심 사 : 마을공동체 소위원회
- 심사방법 : 사업별 대표제안자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
- 심사내용 : 사업의 세부내용 청취(마을사업의 의지 확인), 예산 타당성 검토, 사업의 기대효과, 사후관리 등

## 5. 사업 심사·선정

■ 심사일정 : 2015. 8월초

■ 선정(심사)기준

- 사업의 타당성 - 사업의 필요성, 공익성, 실현가능성
-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- 자발성 및 창의성, 주민참여, 지속가능성, 자부담을 반영정도, 사업의 파급효과

■ 심사방법

- 1차 심사 :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위원회
- 2차 심사 :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 심사

■ 심사결과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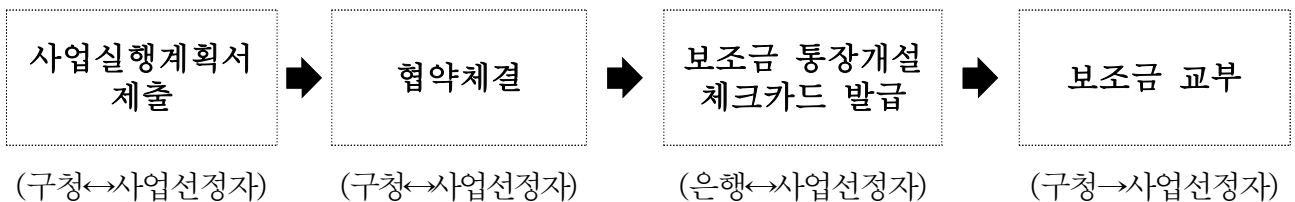
-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(심사내용은 비공개)
- 선정된 모임(단체)는 사업설명 및 회계교육 필수 이수

■ 사업 선정자 제출서류

- 사업실행계획서(선정심사위원회의 수정사항 반영된 실행계획서) 1부.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.
- 청렴서약서 1부.
- 이행확약각서 1부.
- 보조금 통장 사본 및 보조금 체크카드 번호

## 6.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

■ 보조금 교부절차



## ■ 협약체결 : 서대문구와 마을사업자간 체결

### ○ 협약조건

- 사업내용(예산, 대표자 등)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대문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
-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발급받아 사용
-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
  - 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
  - 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  -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
  - ⑤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
  - 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

## ■ 사업 관련 교육

- 일 시 : 협약체결시 또는 필요시 수시교육
- 교육대상 : 사업선정자
- 교육내용 : 마을공동체 전반 사항 및 회계 및 전산 교육  
(보조금 집행기준, 회계 및 정산방법,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)

## ■ 보조금 교부 (구 → 선정사업자)

- 보조금 월별 교부 : 2015년 변경사항
  -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

※ 다만,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기초는 200만원 미만일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
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개정 -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, 2015. 1. 22. 시행

-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 수행 점검 후 보조금 교부

## 7. 사업비 집행(선정사업자)

### ■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

○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비 집행기준(서대문구) - 붙임3 참조

## 8. 사업비 정산 및 평가

### ■ 보고서 제출 (선정사업자 → 구)

○ 사업실적(결과)보고서·정산서·평가서: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

- 증빙서류 제출 : 지출결의서, 지출증빙 서류(원본)

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강사확인서 등)

- 통장사본 : 최초 보조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이체내역 전체

- 기타 자료 : 각종 유인물, 자료집, 사진, 동영상, 언론보도 자료 등

## V

## 추진 일정

| 일 정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5. 7월          | 사업 공모·접수                 |
| 2015. 8월          | 제안자 참여심사 (마을공동체 소위원회)    |
| 2015. 8월          | 1차 마을공동체위원회              |
| 2015. 8월          |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(사업 선정) |
| 2015. 8월          | 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서 접수   |
| 2015. 8월          | 협약체결 및 선정 사업지기 회계교육      |
| 2015. 8월          | 보조금 교부                   |
| 협약체결 ~ 2015.11.30 | 사업시행 및 중간 점검             |
| 2015. 12월         | 사업 결과보고, 정산 및 평가         |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

## VI

## 소요예산

■ 주택과 : 금15,000천원

○ 예산과목 : 주택과, 도시환경개선과주거복지수준향상, 공동주택관리, 공동주택안전점검및관리비용지원, 민간이전,민간경상보조

## VII

## 행정사항
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..... 정책기획담당관
- 아파트공동체사업 참여자 발굴·홍보 및 사업비 지원 ..... 주택과
-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홍보 ..... 홍보과
-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발굴 및 홍보 ..... 동 주민센터 및 전부서

붙임 : 1. 2015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공고문(안) 1부  
2. 사업신청 제출서식 (제안서, 사업계획서 등)  
3. 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(서대문구). 끝.